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9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출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4.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성완)

가. 항만공사 사업내용 조정·확대

① 물류사업의 범위 확대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물류사업의 범위에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을 추가(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함으로써 항만 운영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항만공사가 고객의 하역장비를 임대하고 물류정보 처리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에너지·연료 사업 확대 및 근거 신설

개정안은 해운·항만 분야의 탄소 중립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대상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로 확대하고(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및 관리·운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의3).

개정안을 통하여 국·공유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진해신항 등 새로운 항만 건설에 따른 전력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고 항만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망

을 구축 및 관리·운영함에 따라 친환경 선박 전환과 북극항로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타법에 따른 사업의 수행 및 해외사업 다각화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항만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항만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수행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8조제1항제7호),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만공사의 사업 전체를 국외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개정안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법 개정 절차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국외 사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마련

개정안을 통하여 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된다면, 항만 관리·운영, 항만 배후단지개발, 항만재개발, 물류서비스업 등 공사의 핵심 사업 전반에 걸쳐 공간 활용도와 부가가치 창출 기능이 확대되고, 종전의 「항만공사법」 제28조 및 「항만법」 제57조와의 충돌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대받은 국·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 명확화

현행법 제28조는 공사가 국·공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하는 경우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기부의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기부하는 것 외에,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

개정안은 이처럼 불명확한 조건을 명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개정안을 통하여 항만공사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건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공사 위탁 사업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법 제42조제1항의 관리운영 사업 예시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와 통일시킴으로써 항만공사의 위탁 사업 범위를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항만의 관리·운영 사업 범위와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을 통하여 공사의 위탁 사업 범위가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그동안 존재했던 해석의 모호성과 실무 현장에서의 혼동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